

시험기관의 지정기준(제37조의7제1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

- 가.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「보안업무규정」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자로 지정된 시험기관일 것
- 나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(이하 "인정기구"라 한다)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

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. 다만, 나목 또는 다목의 인력이 라목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- 가. 「보안업무규정」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
- 나.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
- 다.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의 시험·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
- 라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1명 이상

3.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

- 가.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춘 시험실
 - 1) 항온항습 시설
 - 2)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시설
 - 3)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시설
 - 4)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- 나.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 장비(테스트 키트)
- 다. 엑스선검색장비 표면방사선량률 측정장비
- 라. 엑스선검색장비 연속동작시험용 시설
- 마. 엑스선검색장비 등 대형장비용 온도·습도시험실(장비)
- 바. 폭발물검색장비·액체폭발물검색장비·폭발물흔적탐지장비 시험용 유사폭발물 시료
- 사. 문형금속탐지장비·휴대용금속탐지장비·시험용 금속물질 시료
- 아.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및 시험용 낙하시험 장비
- 자. 시험데이터 기록 및 저장 장비

차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